금리인하 요구권

금리인하 요구권이란?

•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 21 조(여신거래조건의 변경) 제 3 항에 의거 고객이 객관적인 요인에 의해 금리인하를 은행과 협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, 은행은 고객이 제출한 금리인하 요구 관련 관련 확인서류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다만,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금리인하 요구사유

- 다음 각 1 에 해당하여 신용등급 상향이 예상되는 경우
 - O 직전 대비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
 - O 직전 대비 부채비율 감소, 차입금 의존도 감소 등으로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
 - O 특허권을 신규 취득한 경우
 - O 기타 신용상태의 현저한 개선 등의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
- 담보제공으로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

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

- O 서류 일체
- O 「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」
- 금리인하시 접수서류 : 「기한연장·조건변경 추가약정서(신청서 겸용)」

신청결과 통지

- 금리인하 신청결과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.
- 「기한연장·조건변경 추가약정서(신청서 겸용)」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.
 - O 기업여신 조건변경(금리인하) 통지서 우편통지
 - O E-mail 통지
 - O 유선 통지(녹취전화기 활용). 단,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 한합니다.

[준법감시인 심의필 건행제 2019-06-001)]